



환경부령 제279호

##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
2008. 2. 27

### 1. 개정이유

실내공기질 관리대상 보육시설을 국공립 시설에서 민간시설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「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」이 개정(대통령령 제20475호, 2007. 12. 28.)됨에 따라 민간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### 2. 주요내용

별표 2(실내공기질 유지기준), 별표 3(실내공기질 권고기준)의 개정

별표 5 비고 2 중 “자세한 정의”를 “정의”로 한다.

시행일 :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 중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에 대한 부분은 2008년 4월 4일부터 시행

#### [별표 2]

실내공기질 유지기준(제3조 관련)

다중이용시설	오염물질 항목	PM10 ( $\mu\text{g}/\text{m}^3$ )	CO <sub>2</sub> (ppm)	HCHO ( $\mu\text{g}/\text{m}^3$ )	총부유세균 (CFU/ $\text{m}^3$ )	CO (ppm)
지하역사, 지하도상가,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, 철도역사의 대합실,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, 항만 시설 중 대합실, 도서관·박물관 및 미술관, 장례식장, 목욕장, 대규모점포		150이하	1,000이하	100이하	800이하	100이하
	의료기관, 보육시설, 국공립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, 산후조리원	100이하				
실내주차장		200이하				25이하

[별표 3]

실내공기질 권고기준(제4조 관련)

다중이용시설	오염물질 항목	NO <sub>2</sub> (ppm)	Rn (pCi/l)	VOC (μg/m <sup>3</sup> )	석 면 (개/cc)	오존 (ppm)
지하역사, 지하도상가,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, 철도역사의 대합실,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, 항만 시설 중 대합실, 도서관·박물관 및 미술관, 장례식장, 목욕장, 대규모점포		0.05이하	4.0이하	500이하	0.01이하	0.06이하
				400이하		
의료기관, 보육시설, 국공립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, 산후조리원				1,000이하		0.08이하

비 고 : 휘발성유기화합물(VOC)은 총휘발성유기화합물(TVOC)을 말하며,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의 정의는 「환경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한다.



환경부 공고 제2008-40호

**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**

2008. 2. 26

**1. 개정이유**

유독물의 지정기준의 일부를 변경하여 「화학물질 분류·표시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(GHS)」에 일치시키고 시험자료의 자료보호기간의 연장을 제한하는 한편,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,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,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며,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·개선하려는 것임.

**2. 주요내용**

가. 유독물의 지정기준을 「화학물질의 분류·표시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(GHS)」에 맞추어 일부 변경(안 제2조 별표1)



## 환/경/법/규

- 나.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없이 유해성심사가 면제되거나 면제확인을 받아 유해성심사가 면제되는 신규화학물질의 대상을 확대(안 제9조)
- 다. 신규화학물질 이외에 유해성심사가 필요한 화학물질의 범위를 일부 삭제 및 구체화함(안 제11조)
- 라. 취급제한물질의 수입허가 면제 대상 축소 및 취급금지물질의 수입 및 영업허가 면제를 폐지(안 제20조, 제21조)
- 마. 유해성심사 신청시 제출하는 시험자료의 자료보호기간의 연장을 5년간 2회로 제한(안 제28조)

### 3. 의견 제출

이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3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(참조 : 화학물질안전과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(<http://www.me.go.kr>) 법령(입법예고)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- \* 보내실 주소 :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화학물질안전과
- 전 화 : 02) 2110-7953, 7958
- F A X : 02) 507-2457
- E-mail : vtlyeok@me.go.kr



## 해외전시회 한국관 참가업체 모집 안내

구 분	전 시 명	미 국 수 자 원 전 시 회 ( W E F T E C )
개 최 기 간		2008. 10. 19 ~ 10. 22
장 소		미국 시카고 McCormick Place
개 최 규 모		1,017업체 참가 / 268,405sq.f
전 시 품 목		수질환경관련기기 및 제품
관 램 예 상 인 원		전문 바이어 20,000여명
과 년 도 전 시 현 황		1,017업체 / 19,929명 전문바이어 참관
한 국 관 참 가 규 모		10업체(90㎡)
행 사 주 관		환경보전협회
참가업체 지원사항		중기청 국고 보조(임차료, 설치비, 홍보물 등 일부보조)
주 요 활 동 사 항		- 환경보전협회 한국관 설치운영 - 우리나라 우수 중소기업 환경설비·기술·제품 홍보 및 바이어상담 - 양국간의 환경산업의 기술교류 확대 및 협조체제 구축방안을 위한 간담회 개최 및 환경기술 세미나발표

※참가문의 : 환경보전협회 기획사업부 (☎02-2249-5265 교환 613, 617, 633)